가계대출 상품설명서

이 설명서는 고객님의 상품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약관의 중요내용을 알려 드리기 위한 참고자료이며, 실제 계약은 대출거래 약정서,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이 적용됩니다. 상품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신 다음에 계약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1. 상품계약 핵심사항

1 가입시점 확인 필요사항

① 해당 상품 관련 수수료는?	② 변동금리 대출의 특성은?
⇒ 대출금을 중도상환하거나, 각종 서류 발급 시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조합창구나 상품설명서 “5. 수수료등의 비용”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 금리변동주기를 짧게 설정할수록 월 상환금액 변동이 빈번 나. 시중금리 상승시 고정금리대출보다 금리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음
③ 만기일시 상환방식을 선택한 경우?	**④ 담보제공시 비용부담은?**
⇒ 가. 월 상환부담 : **만기일시** < 분할상환 나. 만기 상환부담 : **만기일시** > 분할상환	⇒ 가.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신협**이 부담 (인지세 등 일부비용 제외) 나. 근저당권 **말소 · 감액**, **채무자 귀책**으로 근저당권 재설정시 **채무자 부담**

2 대출기간중 확인 필요사항

① 중도상환시 수수료는?	② 일부상환시 수수료는?
⇒ 가. 남은 대출기간이 길수록 수수료 금액 증가 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사유에 대해선 상품설명서 “5. 수수료등의 비용” 참조**	⇒ 가. **‘상환금액’** 기준으로 중도상환수수료 지불 나. 담보물의 일부 해지신청도 가능 (단, **일부해지비용**은 **채무자 부담**)
③ 신용상태 개선시?	**④ 일시적 유동성 악화시?**
⇒ 승진 등 신용상태 개선시 **금리인하요구권**을 **적극 활용**	⇒ **원금상환 유예제도** 적용대상인지 **신협에 문의**하고 동 제도 적극 활용

3 연체시 확인 필요사항

① 연체 금리 산정은?	② 연체금액 상환이 곤란할 경우?
⇒ 가. 기한의이익 상실 이전 : 월상환금×(약정이율+연체가산이율) 나. 기한의이익 상실 이후 : **대출잔액**×(약정이율+연체가산이율)	⇒ 해당 신협에 문의하여 이용가능한 **채무조정제도***를 적극 활용(신협별 기준에 따라 채무조정신청이 거절될 수도 있음) * 연체기간 · 상환능력 등을 검토하여 원금 상환일정 등을 조정

2. 상품개요 및 상품의 특성

상 품 명		대 출 기 간	취급 후 _____개월
대 출 금 액	원	담 보 종 류	☐ 담보 ☐ 신용 ☐ 기타( )
금 리 종 류	☐ 고정금리 ☐ 변동금리	변 동 주 기	☐ 3개월 ☐ 6개월 ☐ 12개월
적 용 금 리	최초 기준금리 ( )% + 가산금리 ( )% = 연 ( )%		

3. 거래구분

※ ( )에 ∨표시 선택

■ 개별거래방식 ( )

○ 대출계약에 따른 대출금액이 계약과 동시에 전액 취급되는 대출 건별 거래방식

■ 한도거래방식 ( )

○ 일정한 금액을 대출한도로 약정하고 그 약정한 대출약정한도 범위내에서 수시로 대출 실행 및 회수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

4. 대출이자율

■ 고정금리

○ 최초 결정된 금리가 채무의 이행을 완료할 때까지 변경되지 않는 금리를 말합니다. 다만,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그 이자율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 대출 약정기간 이내에 기준금리가 변경되는 경우 변동주기에 따라 그 이자율이 변경되는 금리로서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경우 고객의 이자부담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변동금리 예시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 가산금리로 구성되는바, 기준금리 항목이 매 금리변동주기(3개월, 6개월, 12개월)에 따라 변동되는 금리입니다. 기준금리는 신협의 정기예금 1년평균금리, 기한부예금 평균금리, 시장금리(CD(91일물), 산업금융채권(1년물), 국고채(3년물), 회사채 AA⁻(3년물)) 등이 기준금리로 사용됩니다.

■ 대출금리에 대하여 고객님이 알아 두셔야 할 사항

○ 일반적으로 대출시점에는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높으나 변동금리는 향후 경제변화에 따라 이자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고정금리는 금리변동에 관계없이 이자부담이 동일하여 상환계획을 세울 때 편리)

■ 대출금리 결정(변동)요인

○ 대출금리는 원가요소와 마진을 반영하여 결정됩니다. 원가요소는 ① 신협의 자금조달비용 ② 고객 신용도에 따른 신용원가 ③ 제 비용인 업무원가 ④ 신협의 목표배당률, 법인세 등을 감안한 정책마진 등을 고려하여 신협이 결정하며, 결정된 대출금리는 개별약정에 의해 별도로 정한 항목(변동금리대출의 기준금리, 거래실적에 따른 우대금리 등) 이외에는 대출 만기일까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자금조달비용 : 자금조달에 요구되는 비용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고객예금에 대한 지급이자, 신협이 직접 시장에서 조달하는 경우의 이자비용 및 관련 여러 비용 등으로 구성됩니다.

▶ 신용원가 :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과거 경험과 현재의 시장상황을 고려할 때 예상되는 손실과 향후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손실 가능성을 고려한 비용을 말합니다.

⇒ 고객의 신용도가 연체발생 또는 대출금 증가 등으로 악화되는 경우 예상손실 증가에 따른 신용원가 상승으로 대출금리가 큰폭으로 상승할 수 있습니다.

▶ 업무원가 : 인건비, 전산관련 여러 비용 등 업무수행에 수반해서 발생하는 운영비용을 말합니다.

▶ 정책마진 : 신협의 법인세, 목표배당률 등을 감안하여 전략적으로 결정하는 마진을 말합니다.

5. 수수료등의 비용

■ 인지세

○ 인지세법에 의하여 납부하는 비용으로 신협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합니다.

※ 인지세(고객부담) : 금 _____원

대출금액	인지세액	대출금액	인지세액
5천만원 이하	비과세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 조합원이 받는 대출금액 합계액이 1억원 이하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16조에 의하여 인지세 비과세

■ 근저당권설정비용

○ 등록세, 지방교육세, 등기신청수수료, 법무사수수료
- 설정등기를 하는 경우 : 신협 부담
- 감액등기, 말소등기를 하는 경우 : 고객 부담

○ 국민주택채권매입비(고객 부담) : 금 _____원

○ 부담주체가 분명하지 아니한 비용 : 신협과 고객이 균분(고객 부담) : 금 _____원

○ 대출원금 상환에 따라 대출잔액 감소시 근저당권 설정금액 조정이 가능하며, 근저당권설정변경등기에 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담보신탁수수료

○ 담보신탁을 이용하여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담보신탁 보수 및 신탁회사로의 등기이전 관련 비용은 신협이 부담합니다.

■ 한도거래수수료

○ 대월 등 한도거래약정 체결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로 한도거래약정수수료 또는 한도미사용수수료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한도거래약정수수료 : 약정금액 × 한도약정수수료율 ( )% = 금액 (원)

○ 한도미사용수수료 : (약정금액 – 대출기간중 대출평잔) × 한도미사용수수료율( )% × 대출기간(일) ÷ 365

※ 한도미사용수수료는 약정금액의 평균 10% 이상 사용한 경우 면제됩니다.

■ 기타 : 항목( ), 금액(원)

■ 합계금액(예정) : _____원

■ 중도상환수수료

○ 당초 대출일로부터 3년(기한연장)까지 상환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최고 (%)의 범위 이내에서 다음의 산식에 의한 중도상환수수료를 고객이 부담합니다.

※ 산식 : 중도상환금액 × 수수료율 × (잔존일수/대출기간)

〈예시〉 대출금액 1억원, 중도상환수수료 1.5%,
만기가 3년인 대출을 만기 1년 전에 상환할 경우
⇒ 1억원 × 1.5% × 365일/1,095일 = 50만원
(윤년의 경우, 1년을 366일로 계산함)

※ 아래와 같은 사유에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합니다.

1. 대출실행이후 3년이 경과한 대출
2. 채무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
3. 기한연장, 재대출 후 중도상환하는 경우
   (신협의 비용지출이 수반되는 경우는 제외)
4. 당초 대출금액이 5백만원 이하인 경우
5. 변동금리 가계대출을 3년 이상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금액
6. 기한이익상실 등으로 신협이 만기일 이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경우
7. 담보의 소유권이전에 따라 채무자가 변경되는 경우
8. 잔존일수가 3개월 미만인 경우(대출기간이 1년 이하인 경우에는 잔존일수 1개월 미만인 경우)
9. 기한전 상환일에 당초와 같은 조건으로 재대출 취급시 고정금리로 적용하는 금리가 최초금리보다 높은 경우
10. 채무조정제도에 따라 기존 대출을 상환하고 신규대출을 취급하는 경우
11. 신협 이사회 결의를 통해 여신규정시행세칙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대출거래약정 이전에 중도상환수수료 계산방법, 부담조건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비용의 부담)에 의거하여 고객이 부담합니다.

6. 금리 변경요인

■ 고정금리의 경우에도 국가경제 · 금융사정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약정 당시에 예상할 수 없는 현저한 사정변경이 생긴 때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 통지를 통하여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채무자의 신용도의 변경, 담보물건의 가치하락 및 훼손 등 기타 합리적인 사유 발생시에는 채무자에 대한 개별통지를 통하여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요구권 : 고객은 본인의 신용상태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직장변동, 승진, 소득증가, 전문자격증 취득 등)에는 증빙자료를 첨부한 "금리조건변경신청서"를 신협에 제출하여 대출금리의 인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신용평가시스템 등 평가결과에 따라서 금리인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한연장, 채무인수계약 등에 의하여 대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 변경 당시의 원가요소와 마진 등을 기준으로 대출금리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이자납입방법

■ 이자상환기일에 일, 월, 분기, 반기의 일정주기에 따라 이자를 납입합니다.

■ 대월(한도거래) : 매월(또는 분기) 결산일에 납입합니다.

■ 기타 이자납입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8. 원금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방식 : 대출만기일에 대출금의 전액을 상환

■ 분할상환방식 : 대출개시일로부터 익월 또는 일정기간 동안 거치후 만기일까지 분할하여 상환

■ 원금일부분할상환방식 : 대출원금의 일부는 일정기간 동안 분할상환하고 나머지 금액은 만기에 상환

■ 대월(한도거래)방식 : 대출한도 내에서 자유로이 상환하며, 대출만기일에 전액 상환(이자원가시 대출원금에 포함되어 익월부터 이자가 부과됨)

■ **상환방식별 원리금 상환 위험**

○ 거치식대출의 거치기간 종료시 상환부담 : 거치기간이 종료되면 거치기간 연장이 어려울 수 있으며, 분할상환이 개시되어 이자와 함께 원금도 갚아나가야 하므로 상환 부담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 만기일시상환 대출 만기도래시 상환부담 : 만기일시상환상의 경우 대출 만기도래시 한꺼번에 대출원금을 상환해야 하며, 만기연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기타 상환방법은 대출거래약정서 참조

※ 일시상환대출 및 거치식대출의 경우 만기도래 · 거치기간 종료시 만기 또는 거치기간이 연장되지 않을 수 있음

9. 연체이자(지연배상금)의 부담

■ 연체이자율은 [대출이자율 + 연체가산이자율]로 적용합니다.

○ 연체가산이자율은 **최대 연 3% 이내**로 합니다.

○ 연체이자율은 **최고 연 22%**로 합니다.

※ 상품에 따라 연체이자율이 일부 달라지는 경우가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대출거래약정서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이자(지연배상금)를 내셔야 하는 경우**

○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한 날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 1개월까지는 내셔야할 약정이자에 대해 연체이자가 적용되고, 1개월이 경과하면 대출원금에 연체이율을 곱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신용대출 1.2억, 약정이자율 5%, 연체가산이율(3%), 월납이자(50만원)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기간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1개월분	지체된 약정이자(50만원) ×연8%(5%+3%)×1/12	3,333원
연체 1개월 ~ 2개월분	원금(1.2억) ×연8%(5%+3%)×1/12	800,000원
합 계		803,333원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기로 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을 상환하여야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해당 분할상환금(또는 분할상환원리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1.2억(월 1백만원 분할상환), 약정이자율 5%, 연체가산이율(3%)인 대출의 분할상환금(1백만원) 및 이자(50만원)를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기간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1개월분	지체된 분할상환금 약정이자(150만원) ×연8%(5%+3%)×1/12	10,000원
연체 1개월 ~ 2개월분	원금(1억2천만원) ×연8%(5%+3%)×1/12	800,000원
합 계		810,000원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원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한 날에 상환하지 아니한 때**

– 원금을 상환하여야 할 날의 다음날부터는 대출원금에 대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예시〉 원금 1.2억, 약정이자율 5%, 연체가산이율(3%)인 대출의 원금 상환기일에 원금을 미납하여 연체가 발생하고 연체 발생 후 2개월 시점에 납부할 경우

연체기간	계산방법	연체이자
연체발생 ~2개월분	원금(1.2억) ×연8%(5%+3%)×2/12	1,600,000원
합 계		1,600,000원

※ 위 내용은 이해를 돕기위해 연체이자만을 월단위로 단순하게 계산한 예시입니다. **연체이자는 대출조건, 이자일수계산, 대출종류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납부금액은 연체이자에 약정이자를 포함하여 계산됩니다.**

○ **대월 등 한도거래대출이 한도금액부족으로 이자의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은 경우**

–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계속하여 1개월간 지체한 때 또는 신협여신거래기본약관 제7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 발생 시 그에 따라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며,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일중 최고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율에 의한 연체이자를 내셔야 합니다.

※ 이자납입 연체로 인하여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되었을 경우, 연체이자 전액을 납입하지 않고 일부연체이자를 정리하는 경우에도 대출잔액에 연체이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체가 발생할 경우 연체기간에 따라 연체이자 및 기한의 이익 상실에 따른 지연배상금이 발생되며, 또한 신용등급이 하락되어 고객의 일반적인 금융거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0. 개인신용정보 제공조회 및 연체정보등록

■ 개인신용정보의 제공 및 활용

○ 다음의 신용정보들은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 · 집중 · 활용됩니다.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번호, 직업, 국적, 연락처 등
– 신용거래정보 : 개인대출정보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등정보, 대위변제정보 등
– 신용능력정보 : 업체명 등의 일반 · 재무정보 등
– 공공정보 : 체납정보 등

※ 대위변제 :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채무를 대신하여 변제하는 것을 말함.

■ 연체등정보의 등록

○ 대출원금, 이자 등을 3개월 이상 연체한 경우 3개월이 되는 날을 등록사유발생일로 하여 그 때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연체등정보" 거래처로 등록됩니다.

○ **「신용정보관리규약」의 개정으로 연체등정보 기준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연체등정보가 등록되면 금융거래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체등정보로 등록된 후 연체금액을 상환하여 등록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도 등록기간 및 금액에 따라 해제기록이 최장 1년 동안 남아 있을 수 있어 금융거래상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또한, 연체기간 5영업일 이상, 연체금액(원금, 이자 포함) 10만원 이상의 단기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도 신용조회회사를 통해 금융회사 간에 해당 연체정보가 공유되어 신용등급 하락의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정지 등 금융거래가 제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대출기한 전에 채무를 상환해야 하는 경우

■ 기한의 이익 상실 사유(기본약관 제7조 일부 발췌)

▶ **기한의 이익이란?**

기한의 존재로 말미암아 당사자가 받는 이익을 말하며, 신협과의 대출거래에서 채무자인 고객은 당초 약정한 대출기한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아도 되므로 그 기간동안 채무자인 고객이 가지는 이익을 기한의 이익이라 합니다.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면?**

우선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즉시 상환해야하고, 상환이 불가할 경우 연체이자를 부담해야 하며, 일정기간 연체가 지속될 경우 한국신용정보원 연체정보등록 등 신용거래를 제한하는 조치가 취해집니다.

○ **채무자인 고객소유의 예금, 담보부동산에 법원이나 세무서 등으로부터 (가)압류명령 등이 있는 때 등**

⇒ 신협으로부터 별도 청구가 없더라도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 **대출기한이 도래되었거나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을 하나라도 상환하지 아니한 때 등**

⇒ 신협의 서면청구에 의해 모든 대출금(또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기한이 도래하기 전임에도 불구하고 곧 상환하셔야 합니다.

12. 대출 계약시 신용점수의 변동 가능성

■ 대출거래 사실만으로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금융권역의 대출거래는 은행 등 여타 금융권역의 대출거래 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 평균적으로 연체율이 높은 형태의 대출거래는 일반적인 대출거래보다 신용점수가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수 있습니다.

13. 대출계약 철회권

■ 대출실행일로부터 14일(기간의 말일이 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 이내에 신협에 서면 등으로 철회의사를 표시하고 원금,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며 5영업일 이내에 해당대출과 관련한 대출정보가 삭제됩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의 경우 대출계약을 철회할 수 없으며, 대출계약 철회 횟수에 따라 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제외대상 대출

– 채무자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인 대출
– 대출금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
– 대출금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담보대출
– 외부기관 위탁대출 및 협약대출

○ 대출계약 철회권 행사 횟수제한

– 해당 신협을 대상으로 최근 1년 이내에 2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 전체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최근 1개월 이내에 1회를 초과하여 대출계약을 철회하는 경우

14. 체크카드 결제계좌의 예탁금대월계좌 이용 안내

■ 예탁금대월계좌를 체크카드 결제계좌로 이용할 경우 예탁금 대월 사용액에 따른 이자가 발생되므로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5.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가계대출에 대하여 원금부터 상환을 원하시는 경우, 신협에 방문하여 채무변제충당순서 변경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제외대상 : 외부기관과의 협약에 따라 취급된 대출)

변경 전	변경 후
비용 → 이자 → 원금	비용 → 원금 → 이자

16. 채무조정요청권

■ 채무자는 실직, 폐업, 질병 등 불가피한 재무적 곤란 사유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채무변제가 곤란한 경우, 신협이 정한 바에 따라 관련 증빙을 제출하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협은 그 적정성 여부를 심사하여 채무조정 신청 대상이 아니거나, 상환능력 심사결과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채무조정을 거절할 수 있으며, 심사결과에 대해 채무자에게 곧 통보합니다.

17. 신협 · 채무자로부터의 상계

■ 상계란 채무자와 신협이 서로에 대해 금전 채무와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일방적 의사표시로 서로의 채무와 채권을 같은 액수만큼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 신협은 대출 등 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거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 채무자의 대출 등 그 채무와 채무자의 신협에 대한 예금 기타의 채권을 그 채권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의 기한도래 한 예금 기타의 채권과 신협에 대한 대출 등 채무를, 그 채무의 기한이 도래하지 않았어도 서면통지에 의하여 상계할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상계한 예금 등의 통장은 채무자가 그 거래용으로 신고한 도장을 찍거나 서명을 하여, 지체 없이 신협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 경우 대출계약 등 약정내용에 따라 채무자가 수수료(중도상환수수료 등)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필요시 개별 상품에 대한 추가 설명자료 요청이 가능합니다.

※ 이 설명서는 여신거래기본약관의 이자 · 지연배상금 및 비용부담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약정이전에 제공되는 자료로써 상담일 이후 신청금액, 신용금액, 설정금액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출 실행이후 대출상품에 대한 의문사항 또는 불만이 있을 경우 신협 상담실( )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www.cu.co.kr)에 문의할 수 있고,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국번없이 1332) 등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은 신협과 대출거래를 함에 있어 신협직원과 상담하여 대출상품설명서를 교부받았으며, 아래에서 설명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거래의 주요내용 및 고객부담비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 을 확인합니다.

고객확인 : 20 . . . _____ (서명/인)

■ _____ 신협 _____ 지점	■ 상담직원 : (전화 :)